

충청북도립교향악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---

# 검토보고서



행정문화위원회

수석전문위원 연병호

# 충청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

## 1. 회부경위

이 조례안은 2012년 6월 4일 김영주 의원 외 6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12년 6월 7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
## 2. 제안이유

도지사가 지원할 수 있는 사업 및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학교 폭력 예방과 대책사업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함.

## 3. 주요내용

### 가. 직무 명확화(안 제3조)

#### ○ 예술감독의 역할

- 단원의 가량연마와 연주 지휘 → 예술감독 역할은 교향악단 지휘·감독, 지휘자의 역할은 단원의 기량연마와 공연기획·제작 등 공연업무 총괄로서 예술감독과 지휘자가 겸함.

#### ○ 사무국장의 역할

- 사무국 업무 총괄, 홍보, 마케팅, 단원관리, 사무 등 제반 행정지원 업무 담당 → 교향악단의 홍보, 마케팅 등 제반 행정사무 총괄

### 나. 직원의 위촉, 위촉기간, 해촉 등에 관한 조항 신설(안 제5조, 안 제9조, 안 제10조)

#### ○ 직원, 사무국장을 공개전형을 통하여 위촉함(안 제5조)

#### ○ 전형위원회의 위촉, 평정대상을 상임단원에서 상임직원 및 비상임

단원으로 확대(안 제6조)

- 단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단원과 직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으로 확대(안 제10조)

다. 운영자문위원회 운영(안 제11조)

- 당연직 위원을 행정부지사, 문화관광환경국장으로 함.  
→ 당연직 위원을 문화관광환경국장, 예술감독으로 함.
-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하고, 부위원장은 문화여성환경국장이 함.  
→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함.

라. 관람료 감면 대상 추가(안 제16조)

- 「충청북도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병역명문가 가족 포함.

#### 4. 검토의견

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북도립교향악단이 더욱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단원과 직원의 직무 및 복무사항 전반을 정비하고 운영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사항을 보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, 병역명문가 가족이 「충청북도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관람료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감면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서, 동 조례안 개정의 목적과 내용에 대하여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.

붙임 : 충청북도립교향악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 끝.